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기준

개정 2024.11.08.

연구과제 지원

I. 공통사항

1. 지원자격 및 조건(개정 2020.03.01.)

가. 전임교원에 한한다.(비정년트랙 교원(외국인교원 포함)의 경우 논문과제, 실기과제, 저서과제, 지역학과제에 한함)(개정 2011.09.01., 2020.03.01., 2021.03.01., 2024.02.01.)

나. 최근 3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이 필수 450%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용 후 3년 미만의 경우 연구업적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개정 2013.03.01., 2020.03.01., 2024.02.01.)

다. 지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간접비 징수율을 준수한 외부과제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 공고일 기준 외부과제 수행 연구책임자는 예외로 한다.(신임교원 지원과제, 개인실기 발표과제는 외부과제 신청 불필요)(신설 2023.02.28.)

* 외부과제 : 연구과제(연구산학협력단 간접비 징수율을 준수한 경쟁공모과제, 용역과제)로서 사업성 과제(위탁, 교육, 인력양성) 등은 제외.

※ 2024학년도 과제 신청부터 적용

라. 논문과제 및 신임교원 지원과제 지원조건(신설 2020.03.01., 개정 2020.06.22., 2021.3.25., 2021.09.01.)

1) 인문/사회/예체능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2) 이공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 이공계 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정교수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허용

이공계 학과(표준분류계열) :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화학·에너지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식품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AI융합학부, 간호학과,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의류산업학과

마. 교내 연구윤리센터에서 개설한 연구윤리교육(연구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이수) 및 국가 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교육(연구시작일 기준 유효)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20.09.10., 개정 2021.3.25., 2023.02.28., 2024.11.08.)

바. 중복지원 조건(신설 2024.02.01.)

1) 중복지원 허용 과제 : 두 번째 지원은 논문과제, 실기과제, 저서과제, 지역학과제에 한함(단, 논문과제로만 중복지원하는 경우 두 번째 지원 과제는 첫 번째 지원 과제보다 연구비가 높은 구분의 과제로 신청해야 함)

2) 중복지원 자격 : 전년도(1.1.~12.31.)에 연구책임자로 이공계 4,000천원, 인문·사회·예

~~채능계 2,000천원 이상의 간접비(대응자금(현금)을 공제한 순수 간접비) 납부 외부과제를
수주하였거나 전년도 필수 연구업적이 600% 이상인 자~~

2. 선정원칙

- 가. 지원여부는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나. 신입교원 지원과제는 우선 선정한다.(신설 2020.03.01., 개정 2023.04.13., 2024.02.01.)
- ~~다. 교원별 첫 번째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선정된 후 잔여 예산으로 두 번째 연구과제를 선정한다.(신설 2024.02.01.)~~
- 다.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 1) 과제별 배정예산은 신청연구비의 비율에 의해 편성함.(개정 2020.03.01., 개정 2023.04.13., 2024.02.01.)
 - 2) 연구시작일 기준, 임용 후 3년 이내의 교원은 최대 3회 우선 선정하며, 신입교원 지원과제도 우선 선정 횟수에 포함된다.(예: 2028년 3월 1일 기준, 2025년 3월 1일 임용 교원은 임용 후 3년을 초과함)(신설 2024.02.01., 개정 2024.11.08.)
 - 3) 논문과제, 저서과제, 지역학과제(개정 2018.09.01., 2020.03.01., 2024.02.01.)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 중 필수 항목의 총점이 높은 교원 (개정 2018.09.01., 2020.03.01., 2020.06.22., 2024.02.01., 2024.11.08.)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SCI급(SCOPUS 제외) 총점이 높은 교원(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 중 외부연구비 수주(간접비 납부) 실적 총점이 높은 교원(개정 2018.09.01., 2020.03.01., 2024.02.01., 2024.11.08.)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의 총점이 높은 교원(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기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4) 개인실기 발표과제(개정 2018.09.01., 2020.03.01.)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 중 필수항목의 총점이 높은 교원(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최근 2년간(년도 기준) 연구업적의 총점이 높은 교원(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기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5) 부설연구소 지원과제(신설 2023.04.13.)
 - 전년도 부설연구소 평가 점수가 높은 연구소

3. 신청횟수

- 가. 매 년 1개 과제, 1학기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기 신규임용 교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03.01., 2023.02.28.)
- ~~나. 중복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최대 2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03.01., 2012.03.01., 2018.09.01., 2020.03.01., 2024.02.01.)~~

4. 연구수행 원칙

- 가. 모든 연구과제는 단독연구를 원칙으로 한다.
- 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에 한하여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연구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동연구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03.01., 2012.03.01. 2013.03.01., 2015.03.01. 2018.09.01., 2020.03.01., 2020.05.13.)
- 다. 연구비 지원 문구는 오직 우리 대학 지원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교내연구비 이외의 연구비 공동 수혜를 표기할 경우, 우리 대학 지원 표기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1.03.01., 개정 2015.03.01., 2017.03.01., 2017.06.28., 2023.02.28., 2024.11.08.)
- 라. 다음의 경우는 논문을 추가 발표하지 않아도 ‘연구비 공동 수혜 표기’가 가능하다.(신설 2017.06.28., 개정 2023.02.28.)
 - 1) 공동연구로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공동연구자(주저자)의 연구비 수혜 표기 가능. 교내연구과제 연구책임자의 해당 교내연구비 이외의 연구비 공동 수혜 표기(연구비 수혜 표기된 외부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 포함)는 불인정(신설 2017.03.01., 개정 2017.06.28. 2018.09.01., 2020.03.01., 2020.05.13., 2020.06.22., 2023.02.28., 2024.11.08.)
 - 2) 외부연구과제 신청요강에 대학의 대응연구비 지원이 명기되어 있고, 이에 학술연구 조성비로 대응연구비가 지원된 연구과제의 경우.(신설 2011.03.01., 개정 2015.03.01., 2017.03.01., 2018.09.01.)
- 마. 연구발표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20.03.01., 개정 2022.04.06., 2023.02.28.)

5. 신청제외

- 가. 연구 기간 중 퇴직, 휴직 예정인 교원.
- 나. 연구시작일 이후 2년 내에 퇴직 예정인 교원.(SCI급 국제학술지 논문과제에 한함) (신설 2024.02.01.)
- 다. 신청일 현재까지 지원받은 교내연구과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 연구결과 발표기한 종료 후에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개정 2019.08.21., 2020.03.01., 2023.02.28.)
- 라. 연구 결과발표 기한 연장 중으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 단, 연장 중인 과제가 국제학술지 과제인 경우는 제외(신설 2020.03.01., 개정 2023.02.28.)
- 마. 기 발표된 대학(원)생 학위논문 또는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내과제 신청 불가.(개정 2018.09.01., 2020.03.01.)
- 바. 교내과제 신청제외 대상 교원에 대해 타 교원의 교내과제 공동연구 참여는 허용하나, 연구비 지원은 불가(신설 2020.06.22.)
- 사. 연구자로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원.

6. 연구비 집행

- 가. 연구비 관리 : 중앙관리.

- 나. 연구비 청구 및 집행방법 : [별첨1] 참조.(개정 2018.09.01.)
- 다. 예산은 교내연구비 소요예산 작성기준 [별첨2] 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대학 사업자등록번호 209-82-00393)로 집행되어야 한다.(개정 2018.09.01.)
- * 법인카드 사용 시 카드연체 주의 요망(신설 2020.03.01.)

7. 계획변경, 결과보고, 결과발표(개정 2020.03.01., 2022.04.06., 2023.02.28.)

- 가.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연구 계획변경 승인 요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9.01., 2020.03.01.)
 - 1) 연구과제명 변경 : 당초 연구과제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허용함.(개정 2020.03.01., 2023.02.28.)
 - 2) 책임구분 변경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용함.(신설 2024.02.01.)
 - 3) 연구 기간 및 연구결과발표기한 연장 : 연구 기간 연장은 불허함.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연구결과 발표기한을 6개월 단위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개정 2017.09.27., 2018.09.01., 2019.08.21., 2020.03.01.) 또한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4조의 2에 해당하는 교원은 보직 기간을 반영하여 연구결과발표기한을 6개월씩 보직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음.(신설 2021.08.30.)
 - 4) 연구원 변경 : 교내과제 결과물 제출기한 전까지 변경가능.(개정 2018.09.01., 2020.06.22.)
 - 5) 실행예산 변경 : 당초 실행예산의 변경은 예산편성 기준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함.(개정 2018.09.01., 2020.03.01.)
- 나. 연구결과보고 : 결과물 제출과 관계없이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및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연구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1.09.01., 2020.03.01., 2021.03.01.)
- 다. 연구결과 발표(개정 2011.09.01., 2018.09.01., 2019.01.17., 2019.08.21., 2020.03.01., 2020.06.22., 2021.03.01.)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과제의 경우 2년) 이내에 발표가 완료되어야 하며,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원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발표가 완료되어야 한다. ‘웹상에 발표된 논문[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번호가 발급된 논문] 또는 ‘온라인 게재일자 발급 논문’]도 과제 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연구업적의 인정과는 별개.
 - 1) 논문 :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I. 공통사항 1. 논문·논설, 저서, 산학협력”의 국제학술지 및 국내학술지 1항 내지 6항 및 8항 내지 9항(개정 2019.05.10., 2020.03.01., 2020.06.22., 2021.09.01., 2022.01.01., 2023.04.13.)
 - 인문/사회/예체능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K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 이공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 * 이공계 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정교수 : K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허용
 - 2) 저서 :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I. 공통사항 1. 논문·논설, 저서, 산학협력”의 저서 1항 내지 4항(개정 2019.05.10., 2020.03.01.)

- 3) 미술대학 실기발표 : 국외(한국을 제외한 OECD(중국포함) 국가의 화랑) 또는 국내의 공인된 미술전시장에서의 개인전 가 내지 마, 전시기획 가, 나(개정 2019.01.17.)
- 4) 음악대학 실기발표 : 국외(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전문 연주장) 또는 국내 A급 연주장에서의 작품발표로, 성악 1항, 기악 6항, 작곡 11항, 12항(오페라), 반주 15항, 지휘 17항(개정 2018.09.01., 2023.02.28.)
- 5) 융합문화예술대학 실기발표 : 필수 항목 중 150% 이상인 실기업적
- 6) 의류실기발표 : 기타 5항 개인전
- 7) 뷰티실기발표 : 기타 11항 개인전.(신설 2018.09.01.)
- 8) 실기발표는 단과대학별 학술연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 인정된 것에 한함.(개정 2018.09.01.)
- 9) 실기발표 결과물 제출 시 해당 교원의 소속과 이름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연구결과 발표 시 사사 표기(개정 2020.03.01.)

1) 논문 및 실기발표물

- 국문 : “이 논문(또는 전시/공연)은 000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개정 2024.11.08.)
- 영문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0000” (개정 2018.09.01.)

2) 저역서 : 해당 저역서에 표기된 성명, 소속, 표제가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자 성명, 소속, 주제와 동일 시 반드시 사사표기를 요하지는 않음(신설 2019.01.01.)

8.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가. 연구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 1)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2) 연구발표기한까지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18.09.01., 2019.08.21.)
- 3)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혜받은 연구비를 전액 회수함.(개정 2018.09.01.)
- 4)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5) 연구결과물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신설 2020.03.01.)
- 6) 연구수행에 있어 본 연구비 규정 및 지침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7) 연구계획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발표하였을 경우.
- 8)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연구기간 : 1년(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 단,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학년도 과제 기 신청 신입교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입교원에 대해 연구기간을 해당 학년도 9월 1일부터 차년도 8월 말일까지로 하는 교내과제의 신청을 허용함)(개정 2020.03.01., 2020.06.22.)

10. 연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신설 2011.03.01., 개정 2013.09.01., 2018.09.01.)

- 가. 기한 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내과제 신청 불가. 단, 연구비 전액 반납 시에는 신청 가능.(신설 2020.03.01.)
- 나. 해당 기간 내에 연구업적을 제출하지 못한 연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연구 발표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개정 2020.03.01., 2023.02.28.)
- 다. 누적 3회 이상 연구비 반납 시, 2년간 학술연구조성비지원과제(교내과제) 신청을 할 수 없음.(개정 2018.09.01.)

II. 과제현황

1. 논문과제(개정 2020.03.01.)

가. 연구비 지원액(개정 2020.03.01., 2020.06.22., 2022.01.01., 2023.02.28., 2024.02.01., 2024.11.08.)

| 구분 | 연구비(천원) | 추가과제 연구비(천원) | 비고 |
|-------------------------|---------|--------------|----|
|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 | 10,000 | 10,000 | |
| 국제학술지 SCOPUS | 4,000 | 4,000 |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3,000 | 3,000 | |
| 비정년트랙 교원(외국인 교원 포함) | 3,000 | 2,000 | |

나. 신청요건(개정 2020.03.01., 2020.06.22., 2021.03.01., 2021.09.01.)

- 1) 인문/사회/예체능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2) 이공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 * 이공계 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 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정교수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허용
- 3)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원의 연구비 지급은 연구결과발표 후 지급함.

2. 개인실기 발표과제(개정 2020.03.01.)

가. 연구비 지원액(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구분 | 연구비(천원) | 추가과제 연구비(천원) | 비고 |
|---------------------|---------|--------------|----|
| 정년트랙 교원 | 3,000 | 3,000 | |
| 비정년트랙 교원(외국인 교원 포함) | 2,000 | 1,000 | |

나. 신청요건(개정 2020.03.01.)

- 1) 개인전 : 국내 및 OECD(중국포함) 국가의 미술 및 의상분야 전시장에서의 미술 및 의상분야 개인전 등(개정 2020.03.01.)
- 2) 독창(주)회 : 국내 및 OECD 국가의 전문 연주장에서의 독창(주)회(개정 2020.03.01.)
- 3) 지휘, 오페라 주연 : 국내 및 OECD 국가의 국립 또는 시립교향악단 이상의 지휘 및 국제음악제의 오페라 주연(개정 2020.03.01.)
- 4) 작곡 : 국제적으로 공인된 페스티벌에서의 작품위촉, 연주 또는 국내 및 OECD 국가의 전문 연주장에서의 작품발표(개정 2020.03.01.)
- 5) 융합문화예술대학 : 국제적으로 공인된 페스티벌, 국내 및 OECD 국가의 전문 공연장에서의 작품활동(개정 2018.09.01., 개정 2020.03.01.)
- 6)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원의 연구비 지급은 연구결과발표 후 지급함.(신설 2020.03.01., 개정 2021.03.01.)

3. 저서과제(개정 2018.09.01., 2024.02.01.)

가. 연구비 지원액(개정 2020.03.01., 2024.02.01., 2024.11.08.)

| 구분 | 연구비(천원) | 추가과제 연구비(천원) | 비고 |
|------------|---------|--------------|----|
| 국제전문학술도서 | 4,000 | 4,000 | |
| 국내전문학술도서 | 3,000 | 3,000 | |
| 전문학술도서 번역서 | 2,000 | 1,000 | |
| 교양도서(전공분야) | 1,000 | 500 | |

나. 신청요건(개정 2020.03.01., 2020.06.22., 2022.04.06)

- 1) 연구업적 산정기준 저서 1내지 4항에 해당되는 저술활동(논문모음집, 수험서, 워크북, 자기출판(POD) 등 제외)
- 2) 1/저자수(n) 지급, 5명 이상의 공저일 경우 연구비의 20%만 지급(원 단위 절사)하며, 결과물 제출 시 저자 수가 변경되면, 저자수 변경에 따라 연구비 환수
- 3) 정년트랙/비정년트랙 모두 지원가능
- 4)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원의 연구비 지급은 연구결과발표 후 지급함.(신설 2021.03.01.)

4. 신입교원 지원과제(신설 2012.03.01., 개정 2018.09.01.)

가. 연구비 지원액(개정 2020.03.01., 2020.06.22., 2023.02.28., 2024.11.08.)

| 구분 | 연구비(천원) | 비고 |
|-------------------------|---------|--|
| 국제학술지 SCIE, SSCI, A&HCI | 10,000 | 연구재료비/연구시설·장비비 별도 15,000 천원 추가지원 가능 |
| 국제학술지 SCOPUS | 5,000 |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4,000 | |
| 실기발표 | 4,000 | |

나. 신청요건(개정 2020.03.01., 2020.06.22., 2022.02.15)

- 1) 인문/사회/예체능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2) 이공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논문 게재
- 3) 임용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개정 2013.03.01., 2018.09.01., 2020.03.01.)
- 4)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지원가능
- 5) 추가연구비는 3년 이상 재직을 조건으로 함

5. 지역학과제(신설 2020.03.01., 개정 2021.03.01.)

가. 연구비 지원액 : 4,000천원(추가과제 연구비: 3,000천원)(개정 2024.02.01., 2024.11.08.)

나. 신청요건

- 1) 대상지역 : 국내 전 지역(개정 2023.04.13.)
- 2) 대상지역 유관 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해당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개정 2023.04.13.)
- 3) 실기과제의 경우 대상지역의 유관기관과 공동 수행한 실기 결과물을 지역학 과제의 결과물로 인정함

다. 지역학과제 신청 시, 지역 관련성 선택 및 관련 내용 입력

6. 부설연구소 지원과제(신설 2021.03.01. 개정 2022.07.22)

가. 연구비 지원액 : 10,000천원 이내(개정 2024.02.01.)

나. 신청요건

- 1)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부설연구소(부설연구소장이 신청)
 - 2) 결과물(논문 - SCI급 1편 또는 SCOPUS/KCI급 2편, 저서 - 국제/국내 전문학술도서 1권 또는 번역서 2권(개정판 인정불가)) 제출(본교 해당 연구소 소속 구성원) 및 외부사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집단연구사업 등) 신청 또는 수행 필수(결과물 미제출 및 외부사업 미신청 시 차기 부설연구소 지원과제 신청 불가)
* 과제 결과물은 논문 또는 저서 중 선택 가능
 - 3) 본교 해당 연구소 소속 구성원(논문 - 단독 또는 제1저자/교신저자, 저서 - 단독/책임에 한함)의 외부과제 연구비 지원문구와 중복표기 허용(연구비지원 문구 : “이 논문/도서는 0000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부설연구소 지원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4) 타 과제와 중복 신청 가능
 - 5) 연구수당 지급 불가(연구소장), 연구원 인건비 지원 가능(우리 대학 교원 제외)
 - 6) 외부사업(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부설연구소는 신청제외
- 다. 부설연구소 지원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간은 평가 직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하고 실적은 게재일(발간일)을 기준으로 함
- 라. 부설연구소 지원과제 결과물의 저자는 해당 연구소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신설 2024.11.08.)

학술활동 지원

I. 연구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 및 조건(개정 2020.03.01.)

- 가. 전임교원(휴직자 제외)(개정 2017.06.28., 2017.12.11., 2018.09.01.)
- 나. 단독, 제1저자 및 교신저자(논문), 단독저술 및 공동저술(저역서)에 한해 지원(개정 2020.03.01., 2020.05.13.)
- 다.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게재 논문(신설 2020.03.01., 개정 2020.06.22., 2021.09.01., 2022.01.01)
 - 1) 인문/사회/예체능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K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 2) 이공계 교원 : SCIE, SSCI, A&HCI, SCOPUS 학술지 게재 논문
 - * 이공계 교원 중 비정년 트랙 교원 또는 2020년 3월 1일 기준 정교수 : K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허용
- 라. 전문학술도서, 전공분야 번역서 및 전공분야 교양도서(개정 2018.09.01., 2020.03.01., 2024.03.28.)
- 마. 지원구분과 관계없이 교원별 매 학년도 총 10회 이내 지원 가능(신설 2020.03.01., 개정 2024.11.08.)
- 바. 실적물에 반드시 소속(성신여자대학교)을 표기하여야 한다.
- 사. 연구비 수혜문구 표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단, 교내연구비 지원문구 표기 전 지원불가)(신설 2020.03.01.)
- 아. 연구결과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03.28.)

2. 지원액(개정 2011.09.01., 2013.03.01., 2018.09.01., 2020.03.01., 2020.06.22., 2023.02.28., 2024.03.28., 2024.11.08.)

| 구분 | | 기준액(천원) | 비고 |
|-------|-------------------------|-----------------------|---|
| 국제학술지 | SCIE/ SSCI/ A&HCI | Cell, Nature, Science | 20,000 |
| | | JCR 분야별 상위 5%이내 | 5,000 |
| | | JCR 분야별 상위 25%이내 | 4,000 |
| | | JCR 분야별 상위 50%이내 | 3,000 |
| | | JCR 분야별 상위 75%이내 | 2,000 |
| | JCR 분야별 하위 25%이내 | 1,000 | |
| | SCOPUS | 700 | |
| 국내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 500 | 논문 게재료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학회비, 연회비, 심사료 등은 지원 불가 |
| 저역서 | 전문학술도서, 번역서, 교양도서 | 500 | 전공분야의 전문학술도서, 번역서, 교양도서 (편서, 개정판, 증보판 제외) |

- 가. 공동연구 지원기준 (개정 2018.09.01., 2019.05.10., 2020.03.01., 2020.06.22., 2023.02.28., 2024.11.08.)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
| 논문 | 단독, 제1저자 및 교신저자 | · 기준액 x 1/n(본교 전임교원 주저자 수) |
| 저역서 | 단독 및 공동저술자 | · 기준액 x 1/n(저자 수) · n이 5 이상인 경우, 기준액의 20% 지원 |

* 원 단위 절사

나. 국내학술지는 학회발급 영수증과 함께 제출된 논문 게재료만 지원한다.(개정 2020.03.01., 2022.01.01., 2024.03.28.)

3. 연구결과물 제출

가. 소속(성신여자대학교)이 표기된 논문별쇄본, 저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01., 2020.03.01.)

II. 학술대회지원(개정 2011.09.01., 2017.05.01., 2017.06.28., 2018.09.01., 2019.02.27., 2020.03.01.)

가. 지원액 및 지원기준

| 구 분 | 지 원 액 | 지 원 기 준 |
|-------------------------|----------|---|
| 전국규모 이상 학회의 학술대회유치 개최지원 | 100만원 이내 | 1. 학진등재(후보포함)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본 대학교에 유치(개정 2023.04.13.) 2. 정년트랙 전임교원(휴직 및 연구년 교원 제외)으로서, 학술단체의 회장단(회장, 부회장) 및 직무이사(총무, 연구, 편집이사 등)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03.01., 2017.06.28.) 3. 본교 단과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 주관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프로그램에 단과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주최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개정 2017.05.01.) 4. 신청서류 : 신청서, 학술대회개최계획서(학회) 5. 학술단체 당 연간 1회에 한함 |

나.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은 법인카드 및 세금계산서로 집행되어야 한다.(신설 2023.02.28.)

부 칙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나 연구활동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나 연구활동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나 연구활동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 2. 2011년 8월 31일에 보직만료된 부총장, 처장은 연구년신청시 ‘교원연구년 운영 기준 다. 신청자격(4)호’ 의 개정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나 연구활동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에 의해 “공통사항, 10. 연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사항” 은 2011학년도 연구과제부터 적용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 기준으로 선정된 연구년 과제는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교원 연구년 운영 기준’ 의 ‘라. 신청제외자’ (6)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공통사항’, ‘6.연구비 지급 및 정산’ 의 나.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공통사항’, ‘5.연구수행 원칙’ 의 라.항은 2017년 3월 1일 발표논문부터 적용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7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II. 과제현황’, ‘5. 신입교원 지원과제’, ‘나. 신청요건’ 의 1)항과 관련하여, 신입교원 지원과제를 기 신청하여 선정된 교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7.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 ‘가. 연구계획 변경’, ‘2) 연구 기간 및 연구결과발표기한 연장, 나. 연구결과발표기한 연장’ 과 관련하여, 2019년 8월 21일 부칙 시행일 현재, 연구결과 발표기한이 미 도래한 교내연구과제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0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연구과제 지원’, ‘I. 공통사항’, ‘4. 연구수행 원칙의 나항 및 라항’, ‘학술활동 지원’, ‘1. 연구장려금지원’, ‘1. 지원대상 및 조건의 나항 및 2. 지원액의 가항’ 은 2020학년도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구과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③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연구장려금 지원은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연구과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구과제의 신청부터 적용된다.
- ③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물의 연구장려금 지원은 이전 기준을 준용한다.